

의안번호	2201115
의 퇴 인	강유정의원
회 답 일	2024. 7. 25.
추 계 번호	24C147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문화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200만원, 2029년 1,2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000만원(연평균 1,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문화정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의3)	12	12	12	12	12	60	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3(문화정책위원회)	문화진흥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위원회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문화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등으로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8조의3(문화정책위원회)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문화정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의3)

- 문화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장소 임차료나 지원인력 등 부대경비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문화정책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문화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가 되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고려하여 민간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인 12명으로 가정
 - 회의 횟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¹⁾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연 4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고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은 회당 25만원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문화정책위원회에 민간위원을 12명 위촉하여 매년 4회씩 회의를 개최하는 데 연간 1,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12\text{명} \times 4\text{회} \times 250,000\text{원} = 12,000,000\text{원}$

[표 4] 문화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문화정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의3)	12	12	12	12	12	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우병혁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우병혁	02-6788-3739	wbhcd@assembly.go.kr